예약 판단 기준

제1조(적용 범위)

1. 본 세칙은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(이하 본회)가 담당하는 공간에 대한 예약을 심의할 때 기준이 된다.

제2조(명칭)

- 1. 행사 예약자는 본회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행사를 예약한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.
- 2. 행사 주최자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. 주최자는 예약자와 다를 수 있다.

제3조(예약자)

- 1. 행사 예약자와 행사 주최자는 기본적으로 학생, 교원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으로 한다.
- 2. 행사 주최자가 교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 본회의 관리팀 회의나 본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한다.
- 3. 예약의 우선권은 기본적으로 예약 시간이 빠른 경우로 하지만, 가치가 충돌할 때 1순위: 행사주최자가 학부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2순위: 행사주최자가 대학원생, 혹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부생인 경우 3순위: 행사주최자가 교직원인 경우 로 판단한다.

제4조(영리성)

- 1. 본회가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a.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판매 행위를 하여 현물이 오가는 경우
 - b.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상품에 대한 상업성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
 - c.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할 경우
 - d.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외부 기업의 스폰서, 후원을 받는 행사일 경우
 - e. 그 외 해당 행사가 영리성이 있다고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판단한 경우
- 2. 영리성을 띄고 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지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간 담당 팀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예약을 심의할 수 있다.
 - a. 발생한 수익의 전액이 학생 문화 증진에 사용된다는 근거를 제출해야하며, 그후 예약 판단을 위한 의결을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진행해 가결된 경우
 - i. 그 근거는 예상 수익 금액과 그 수익 금액 중 어떤 항목으로 문화 증진에 사용될 지를 비율을 명시한 계획안을 말한다
 - b. 행사의 질서를 위한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행사일 때 본회에서 예약 판단을 위한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해 가결된 경우
- 3. 행사 예약자는 행사가 영리성이 있는지, 행사에 얻는 수익이 문화 증진에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모든 판단 권한을 본회에 위임해야한다.
 - a. 단, 같은 행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판단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 저해)

- 1. 본회가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a. 종교적,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논쟁거리가 충분한 행사

- i. 단, 본교 학부 동아리연합회 종교 분과 동아리들에 한하여 관리팀과 협약서를 작성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간에 대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.
- b. 그 외 해당 행사가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관리팀회의 및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판단한 경우
- 2.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회에서 심의한다. 해당 공간 담당 팀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예약을 허용할 수 있다.
 - a. 행사 내용에 대해 관리팀과 사전에 조율한다.
 - b. 제출된 서류 혹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다.
- 3. 행사가 논란을 일으킬 때 본회는 본회의 판단으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.
- 4. 행사 예약자는 행사가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판단 권한을 본회에 위임해야한다.
 - a. 단, 같은 행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판단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)

- 1. 본회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a. 주류가 반입되는 행사
 - i. 단, 각 공간 운영 세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.
 - b. 행사 참여자 중 외부인의 비율이 50%를 초과하는 행사
 - c. 그 외 해당 행사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판단한 경우
-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지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예약을 심의할 수 있다.
 - a. 행사 예약자가 물품 파손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
- 3. 행사 예약자는 행사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되는지 등에 대한 모든 판단 권한을 본회에 위임해야한다.
 - a. 단, 같은 행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판단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패널티)

- 1. 다음과 같은 경우 행사 예약자와 행사 주최자는 경고 없이 해당 행사일자로부터 365일동안 본회가 담당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예약을 금한다.
 - a. 영리성을 띄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행사를 진행한 경우
 - b.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행사를 진행한 경우
 - c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될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행사를 진행한 경우